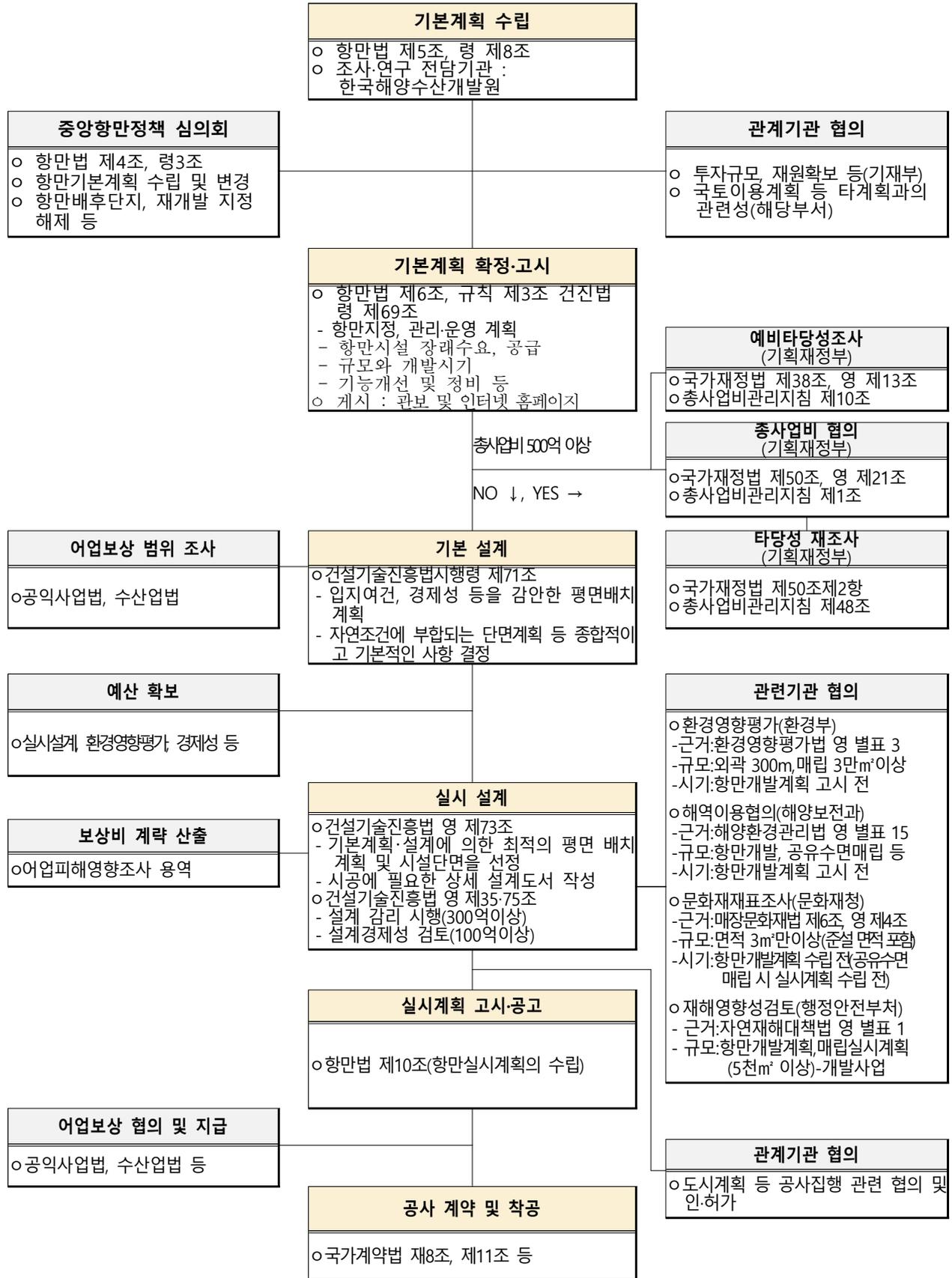


항만 및 어항공사 집행절차

1 항만건설사업



<p>전략환경영향평가 (환경부)</p> <p>○환경영향평가법 영 별표2 -계획: 어항의 지정 -시기: 어항의 지정 전</p>	<p>어항의 지정</p> <p>○어촌어항법제17조 시행규칙 제10조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지정수요 발생 ② 지정 타당성조사(어촌어항법 규칙 제10조) ③ 대상항 선정(어선 수, 톤수 등) ④ 개발 기본구상조사(건설법 영 제68조) ⑤ 관계기관 협의 및 주민의견청취(어촌어항법 제17조, 부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) ⑥ 어항 지정 고시 	<p>예비타당성조사 (기획재정부)</p> <p>○국가재정법 제38조 영 제13조 ○총사업비관리지침 제10조</p>
<p>재해영향성검토 (행정안전부)</p> <p>○자연재해대책법 영 별표 -계획①: 어항개발계획 -계획②: 매립기본계획 -시기: 계획의 수립 전 * 행정계획</p>	<p>기본계획</p> <p>○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69조</p> <p>- 어항시설에 관한 종합적이고 기본적인 계획</p>	<p>총사업비 협의 (기획재정부)</p> <p>○국가재정법 제50조 영 제21조 ○총사업비관리지침 제1조</p>
<p>관계기관협의 (연안계획과)</p> <p>○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○해양공간성 적합성 협의</p>	<p>기본 설계</p> <p>○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71조</p> <p>- 입지조건, 경제성 등을 감안한 평면배치계획 - 자연조건에 부합되는 단면계획 등 종합적이고 기본적인 사항 결정</p>	<p>타당성 재조사(에타 미 실시 사업) (기획재정부)</p> <p>○국가재정법 제50조제2항 ○총사업비관리지침 제48조</p>
<p>공유수면매립면허 및 실시계획승인 (시·도지사)</p> <p>○어촌어항법 제8조제34조 ○공유수면법 제28,35,38조</p>	<p>어항개발계획 고시</p> <p>○어촌어항법 제19조(어항개발계획의 수립)</p>	<p>실시설계 예산요구</p> <p>○실시설계, 환평, 경제성 등</p>
<p>시설비·건설사업관리 예산요구</p>	<p>실시 설계</p> <p>○건설기술진흥법 영 제73조</p> <p>- 기본계획·설계에 의한 최적의 평면 배치계획 및 시설단면을 선정</p> <p>- 시공에 필요한 상세 설계도서 작성</p> <p>○건설기술진흥법 영 제35·75조</p> <p>- 설계 감리 시행(총공사비 300억이상)</p> <p>- 설계경제성 검토(총사업비 100억이상)</p>	<p>관계기관 협의</p> <p>○환경영향평가(환경부) - 근거: 환경영향평가법 영 별표 3 - 규모: 외곽 300m 매립 3만㎡이상 - 시기: 어항개발계획 고시 전</p> <p>○해역이용협의(해양보전과) - 근거: 해양환경관리법 영 별표 15 - 규모: 어항개발, 공유수면매립 등 - 시기: 어항개발계획 고시 전</p> <p>○문화재대표조사(문화재청) - 근거: 매장문화재법 제6조 영 제4조 - 규모: 면적 3㎡이상(준설면적 포함) - 시기: 어항개발계획 수립 전(공유수면 매립 시 실시계획 수립 전)</p> <p>○재해영향성검토(행정안전부) - 근거: 자연재해대책법 영 별표 1 - 규모: 어항개발계획, 매립 실시계획(5천㎡ 이상)-개발사업</p>
	<p>어항개발계획 고시(필요 시)</p> <p>○ 어촌어항법 제19조(어항개발계획의 수립)</p>	<p>국유재산 등기</p> <p>○어촌어항법 제28조 ○어항관리청 통보</p>
	<p>사업 착수</p> <p>○ 어촌어항법 제23조(어항개발사업의 시행)</p> <p>- 사후환경영향조사(공사 시)</p> <p>- 건설사업관리용역(200억 이상)</p> <p>-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납부(대상사업)</p>	
	<p>공사 준공</p> <p>○ 사후평가(300억이상, 건진법 제52조) ○ 사후환경영향조사(운영 시)</p>	